

삼성 클래식 30 연금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 1 호[채권혼합]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하나은행

# 삼성 클래식 30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 1 호[채권혼합]

전면개정 2009. .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 투자하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은 국내 경제 상황 및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제3조 제6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⑤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 ①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삼성클래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삼성강국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증권시장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매 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 클래식30연금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채권]을 말한다.
5.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제2조제2항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6.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아래 각 목의 투자 신탁을 통칭하여 “삼성연금업브렐러”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이하 “전환대상투자신탁”이라 한다)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삼성 클래식연금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나. 삼성 클래식인덱스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주식]
  - 다. 삼성 클래식60연금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 라. 삼성 클래식30연금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 마. 삼성 클래식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제1호[채권]
7. “투자재산”이라 함은 수익자가 납입한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중 발생한 손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여야 한다.
10.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 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11. “연금지급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12. “자동환매 신청일”이라 함은 연금지급일에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환매 주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는 날을 말한다.
13.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제2장 수익권과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을 매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연금지급방법은 일부환매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나. 환매가격
  -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변경의 경우
2. 신탁업자의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신탁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2. 제2조제2항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2호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4.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단기대출
  2.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4.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전환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9
  2.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6.9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두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48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제3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가입자격 등)①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판매회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 위반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수익자의 투자한도초과 등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투자방법 등)①투자자(수익자 포함)는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5조 (투자기간 등)① 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이전받기 전이나 투자신탁의 전환을 받기 전의 투자기간도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에 통산한다.

1. 적립기간 : 10년이상
2.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 5년이상

② 수익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단축 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1년 이상으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6 조(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3 조제 6 호에서 규정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그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와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가입 당시에 정한 투자신탁의 전환조건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청구일의 영업일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1. 제 3 조제 6 호가목 및 나목의 투자신탁에서 제 3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건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한다.

2. 제 3 조제 6 호다목의 투자신탁에서 제 3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건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한다.

3. 제3조제6호라목의 투자신탁에서 제3조제56의 규정에 의한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4. 제3조제6호마목의 투자신탁에서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삼성연금업브렐러에 속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

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해 전환처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증권시장의 개장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제 2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해 전환처리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제 57조(투자신탁계약의 이전)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한다.

1 제3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투자신탁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수령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제4영업일)에 이전한다. 단,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6호다목의 투자신탁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제5영업일)에 이전하며,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15시경과 후 이전청구한 건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3. 제3조제6호라목의 투자신탁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5영업일)에 이전한다. 단,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4. 제3조제6호마목의 투자신탁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4영업일)에 이전한다. 단,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한다.

5. 이전처리시에 적용되는 영업일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투자신탁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 58조(연금의 지급개시)①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한다.

②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 지급을 위한 자동환매 신청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9조(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T일)의 4영업일전일(T-4영업일)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 연금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좌수를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회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T일)의 전영업일(T-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을 위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연금지급액=(연금지급일(T일)의 4영업일전일(T-4영업일)의 수익증권 잔고좌수÷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T일)의 전영업일(T-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1,000

②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로 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한다

④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한다

제60조(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 처리)

①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②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계좌를 중도해지 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투자신탁의 분리 등) 이 투자신탁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모자형투자신탁에서 다른

자투자신탁과 분리하여 별도의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변경하거나 모자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의 효력 등)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투자신탁 해지 및 수익자에 대한 공시에 관한 령개정 반영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연금 지급 시기 변경기한 및 연금지급액 산정계산식 변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연금지급액 산정계산식 변경 및 전환회수 제한 삭제 등)